

예산총칙

2024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2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1,336,573,812	40,097,214
일반회계	1,189,043,290	35,671,299
특별회계	147,530,522	4,425,916
공기업특별회계	141,494,477	4,244,834
상수도사업특별회계	29,920,808	897,624
하수도사업특별회계	111,573,669	3,347,210
기타특별회계	6,036,045	181,081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2,636,557	79,097
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	43,717	1,312
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	672,000	20,160
폐기물처리시설사업기타특별회계	186,673	5,600
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	2,153,321	64,600
지하수특별회계	343,777	10,313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,684,912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76,2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